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안철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51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4.

발 의 자 : 안철수 · 백종현 · 서천호
김예지 · 김성원 · 임이자
배준영 · 김 건 · 김승수
김상훈 · 김장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그런데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낮아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82조제2항제3호·제4호 신설)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40조제1항(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대피 명령을 위반한 사람
4. 제41조제1항제2호(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제82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의3. (생 략)	1. ~ 1의3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40조제1항(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</u>	<u><삭 제></u>
3. <u>제41조제1항제2호(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</u>	<u><삭 제></u>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<u>제40조제1항(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</u>
<u><신 설></u>	4. <u>제41조제1항제2호(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</u>

③ (생 략)	<u>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</u> <u>사람</u> 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